신입학

제5조(입학자격)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

편입학

제11조(편입학 인원.자격) ①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

②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장나이 되 저	15 () 왕구기	전적대학원	
학위과정	편입학기	등록학기이수학점1학기 이상6학점 이건	이수학점
석사	2	1학기 이상	6학점 이상
의 역사 	3	2학기 이상	12학점 이상

휴학

제17조(휴학의 종류)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일반휴학 : 질병, 사고,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
2.군입대휴학: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

3.모성보호휴학 : 임신, 출산,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
재입학

제13조(재입학의 허가)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 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입학의 불허)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.

제15조(재입학의 절차) ①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교과과정 및 학점취득

- 제32조(최소이수학점) ①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 - 1.석사학위청구**논문**(이하 "학위청구논문"이라 한다)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**24학점 이상**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2.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,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**30학점 이 상**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39조의 4(석사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)(조신설 2019.6.1.)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제39조의 5(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)(조신설 2023.11.1.)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후, 소속대학원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이수할 수 있는 학기당 학점은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 다만,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소속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- 제41조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해당학과의 교과과 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학점 인정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(변경 2010.1.1.)

시험 및 성적

제47조(성적의 취소)

재학생은 등급이 C+이하인 교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.

수 료

- **제50조(과정수료)** 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(5학기) 이상을 등록하고,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과정수료를 인정한다.
 - ②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한다.

종합시험

- 제58조(종합시험) ①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 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- ②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 (미술사학과-2과목)
 - ③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석사과정 18학점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이수한 자
 - 2.4학기 이상 등록한 자
 - ④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, 소정의 수 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(과목별 20000원)
 - ⑤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학위청구논문 제출

- 제61조(논문 제출자격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 - 1.5학기 이상 등록하고,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예정인 자
 - 2.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 - 3.소정의 논문지도과목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자(해당 대학원에 한함)
 - 4.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을 받은 자
- 제62조(논문 제출시기) 학위청구논문은 5월 또는 11월에 제출한다.
- 제63조(논문 제출부수.절차)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 하여 학위청구논문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,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졸 업

제75조(학위수여) 석사과정을 수료하고,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[휴·복학]

- >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미복학,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당한 경우 재입학을 한다면 다시 3회의 휴학이 가능합니다. 단, 모성보호,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> 질병휴학 역시 일반휴학에 포함되며, 신청 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> 모성보호 휴학의 경우 <u>임신,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</u>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> 휴/복학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- 1)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(Myiweb)에서 신청 (1월, 7월 중순)
- 2) 휴복학원서 제출을 통한 신청
- > 신입생의 경우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. 이는 합격자안내문에 명시되어있으며, 일반휴학 중 **질병휴학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습니다.**

[수강]

- 수강 신청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합니다.타대학원 수강신청은 한 학기 3학점, 재학 중 12학점까지 가능.학부 수업은 6학점까지이며 학점인정 가능함.
- > 수강신청 방법
 - 수강신청 방법 : 수강신청 기간에 Myiweb에서 본인이 신청 또는 수강신청원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
- 타대학원 및 학부수업 수강신청 방법 : 소속 외 교과목 수강신청원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

[교내 장학]

> 장학 종류 및 대상자, 제출서류에 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장학종별	대상	제출 서류	비율
총장 특별장학	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	장학 신청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. -	1종 : 100% 2종 : 50% 3종 : 40%
교육조교	1. 행정부서 조교 (1종)		1종 : 100%
장학	2. 전임교원 배정 교육조교 (2종)		2종 : 50%
대학원장 특별장학	1. (문화예술) 원우회장 (1종) 2. (문화예술) 원우회 부회장 (2종)		1종: 60% 2종: 30% 3종: 20%
동문장학	명지대학교 졸업생		20%
동종장학	학과와 동일계통 업계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		20%
현직교사			
및	초, 중, 고 현직교사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		200/
공무원	(해당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)		20%
장학			

- > 장학금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,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급됩니다.
- > 2개 이상의 교내장학금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, <mark>교내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</mark> 여기서, 교내장학금은 발전기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장학을 말합니다.

[종합시험]

- >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& 18학점 이상 취득 & 평점 3.0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학생이 3월, 9월에 신청하여 4월, 10월에 실시합니다.
- >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며, **문화예술대학원은 2과목**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

[졸업방법 선택]

- > 4학차 학생들은 특정 기간에 졸업 방법을 선택해야 함. (필수) 수기로 졸업방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.
- > 4학차 때 졸업방법을 선택했던 5학차 및 수료생들이 졸업방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 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. **단, 논문졸업에서 학점졸업으로만 변경이 가능

[성적]

- > 특수대학원은 절대평가입니다.
- > 대학원에는 성적포기제도가 있으며, C+이하의 성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.

[학적]

> 특수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졸업방법	수료 요건	졸업 요건
		- 5학기 이상 등록
		- 24학점 이상 취득
		- 평점 3.0 이상
논문		- 종합시험 합격
	- 5학기 이상 등록	- 논문지도 1P
	- 24학점 이상 취득	- 논문심사 합격
	- 평점 3.0 이상	- 논문 최종본 제출
		- 5학기 이상 등록
싫지		- 종합시험 합격
학점		- 30학점 이상 취득
		- 평점 3.0 이상

> 졸업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며, 수료생 상태로 남습니다. 다만 학점 취득을 추가로 해야하는 경우는 초과 학기생이 됩니다. 수료생과 초과학기생의 경우,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[연구등록]

- > 5학기를 채웠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상태로 남은 경우, 졸업을 하기 위한 나머지 조건 (종합시험, 논문제출, 학점이수 등)을 완료하기 위해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> 연구등록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나, 종합시험 신청, 논문심사 신청 등의 비용은 납부 해야합니다.
- > 단, 학점이 부족하여 추가로 수강을 하려는 경우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하며, 3학점 이하로 신청 시 등록금의 반액, 4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학 사 일 정

일 정	세 부 내 용	비고
3. 1.(수)	3.1절, 학기 개시일	
3. 4.(월)	2024학년도 1학기 개강	
3. 4.(월) - 3. 8.(금)	수강신청 최종 변경기간	
3. 4.(월) - 3. 15.(금)	장학금신청서류 제출기간	
3. 18.(월) - 3. 22.(금)	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	
4. 10.(수)	22대 국회의원 선거	
4. 15.(월) - 4. 19.(금)	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	
4. 15.(월) - 4. 19.(금)	종합시험예정(대학원별 시험일자 별도 공고)	
4. 15.(월) - 5. 3.(금)	졸업방법(변경) 신청서 제출(4,5학기 재학생) 및 지도교수제청서 및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(4학기 재학생)	
5. 5.(일) - 5. 6.(월)	어린이날 (대체휴일 포함)	
5. 15.(수)	석가탄신일	
5. 27.(월) - 6. 7.(금)	1학기 강의평가기간	
6. 6.(목)	현충일	
6. 10.(월) - 6. 14.(금)	1학기 기말고사	
6. 10.(월) - 6. 21.(금)	최종 성적입력 기간	
6. 14.(금)	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기간	
6. 17.(월) - 6. 20.(목)	공휴일로 인한 수업보강(기말고사) 기간	
6. 17.(월) - 8. 30.(금)	하계방학	
6. 24.(월) - 6. 26.(수)	1학기 성적포기 및 성적이의신청기간	
7. 8.(월) - 7. 19.(금)	휴학 및 복학신청기간	
7. 12.(금)	석사 학위청구논문(최종본) 제출 마감	
7. 29.(월) - 8. 2.(금)	하계 집중 휴무기간	
8. 12.(월) - 8. 20.(금)	2학기 수강신청기간	
8. 15.(목)	광복절	
8. 19.(월) - 8. 30.(금)	2학기 등록기간	
8. 20.(화)	[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	



- ① **종합관** (=구본관)
- ② 학생회관
- ③ 미래관 (=미래교육원, 미래융합대학)
- ④ 국제관 (=구 경상관)
- ⑤ 행정동
- ⑧ 생활관
- ⑨ 방목학술정보관 (=도서관)
- (10) MCC관 (=신관)

* S(서울캠퍼스) + 건물 번호 + 층수 + 호수

ex) S10303 : S10 (MCC관) 3층 03호